7.4 띠장

- (1) 띠장의 수직간격은 2.0m이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 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2) 비계기등과 띠장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클램프(고정형)로 체결하며, 300~ 350kgf·cm 이상의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.
- (3)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철물(강관 조인트 등)을 사용하고, 교차되는 비계기둥에는 조임 철물(클램프 등)로 결속하여야 한다.
- (4)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cm 이상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.

7.5 장선

- (1) 징선은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가능한 근접하게 비계의 내·외측 기둥 또는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.
- (2) 장선은 작업발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1.85m 이하로 설치하되,부득이한 경우 작업발판 지지용 철물을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비계기등과 장선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클램프(고정형)로 체결하며, 300~ 350kgf·cm이상의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.
- (3)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,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부분 이 $10\sim20$ 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하고,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 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돌출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7.6 가새